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 규정(안 제3조)
- 제설·제빙작업 시기의 구체화(안 제4조)
- 제설·제빙작업의 방법 구체화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(안 제5조)

- 제설·제빙작업의 필요한 도구 및 안전장비 구체화(안 제6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건축과, 및 도로과와
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- 본 『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의 개정
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
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,
 -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
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